



美國의 에너지稅制 개혁

최 근 第 2 的 美國革命으로 부르면서 稅制의 簡素化를 목적으로 美行政부가 작성한 稅制改革案이 議會에 제출됨으로써 石油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稅 개혁안이 논쟁의 촛점이 되고 있다. 에너지稅를 중심으로 美國의 稅制改革案을 분석 한다.

I. 에너지稅法 改正의 주요내용 및 목적

최근 레이건大統領이 발표한 개혁안(第Ⅱ案)에 포함된 에너지에 관한 주요 稅法改正 내용은 生產量比例 採掘充當金制度(Percentage depletion)의 단계적 폐지, 無形試錐費用(IDC : Intangible drilling cost)의 제한적 費用化 허용, 각종 稅額控除制度의 간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같은 改正案은 업계의 반발로 인해 당초 財務

省이 작성한 개정안(第1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第I案에서는 Percentage depletion 제도의 즉각 폐지, 그리고 IDC의 費用化는 전면금지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

美정부는 稅制개혁안을 발표하면서 稅法改正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행의 稅法으로 天然資源의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업자들은 장기간 혜택을 누려왔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여타 산업과의 衡平을 위해 補助金의 성격을 지니는 일부 稅制惠澤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의 방법으로서 일부 投資稅額 공제제도를 제거하고, 減價償却방법을 수정한다. 그러나 에너지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產業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無形試錐費用의 일부 비용화를 허용하며, 실험·연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美國의 稅法改正案

項 目	現 行	I 案	II 案
採掘充當金制度	Percentage depletion 및 cost depletion 선택가능	Percentage depletion 폐지	Stripper well을 제외하고 percentage depletion 5년 내 폐지
無形試錐費用	費用化 및 資本化中 선택 가능	費用化 폐지	費用化범위의一部 축소
3次回収費用(tertiary injection expense)의 損費處理	일부 費用處理 가능	費用化 폐지	현재대로 시행
試錐事業을 하는 組合(drilling partnerships)	法人과 別度로 處理	大組合은法人으로 처리	現行制度反映

金特惠 항목으로 처리하여 最低稅率을 부과한다.

II. 生產量比例充當金제도

1. 現行 採掘充當金제도

현재 美 稅法下에서 鑛物資源에 대한 採掘充當金制度에는 生產量比例法(Percentage depletion)과 原價回收法(Cost depletion)이 있다. 前者는 해당 資產으로부터 생산된 자원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總所得에서 일부를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이를 費用化 하는 방법으로, 설정비율은 業種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稅前純利益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후자는 業者가 보유하는 당해 資產으로부터 課稅年度에 생산·판매된 물량을 總埋藏量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算定한 후, 당해 資產을 취득하는데 투입된 總 코스트에 이 비율을 곱함으로써 구한 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후자에 의한 충당금은 자산의 總取得原價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재의 美稅法下에서 石油 및 가스業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上記한 2 가지 방법 중 擇一하여 사용할 수 있다. 美稅法 613條에 의하면 長期契約을 締結한 天然gas 生產業者, 일부 独立係生產者 및 租鑛權設定者(royalty owner)는 15%의 Percentage depletion率이 적용된다.

2. 採掘充當金제도의 개정안 및 시행 방법

第Ⅱ改正案에 의하면 모든 鑛物資源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生產量比例法에 의한 충당금제도는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Stripper well(하루 10배럴 이하)에서 石油와 가스를 생산하는 独立係 生產業자의 경우는 5년후에도 이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石油換算 하루 1,000배럴 이하의 石油와 가스를 생산하는 独立係生產者와 租鑛權設定者도 5년내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生產量比例法을 사용하는 경우, 이 방법에 의한 충당금이 原價回收法에 의한 충당금을 초과하거나 또는 資產取得原價를 초과할 시에는 초과액은 稅

3. 採掘充當金制度의 개정이유

生產量比例法에 의한 충당금제도는 납세자의 資產取得原價를 초과해서 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납세자의 투자액을 초과하여 稅制惠澤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稅制惠澤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며 資源生產에 효과적인 인센티브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자산의 취득과 資源의 생산에는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生產量比例法에 의한 稅額控除制度는 新資源에 대한 탐사보다는 기존자원의 고갈을 촉진하게 될 뿐이다. 더욱이 이 방법에 의한 충당금 限度額이 稅前純利益의 50%로 되어 있어 보조금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收益性이 가장 높은 生산업자에게 稅制惠澤을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나 生產量比例法에 의한 충당금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국내의 일부 石油 및 가스 生產業자에게 損傷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 石油 및 가스가격이 계속 침체상태에 있어 수익성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의 완전 폐지는 국내 에너지생산을 감소시키고 해외의존도를 높여 국제수지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Stripper well에 대한 Percentage depletion 제도의 적용은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組鑛權設定者(royalty owner)에게 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광권자의 생산의사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III. 無形試錐비용의 損費처리

1. 개정안 및 시행방법

현재의 稅法下에서 탐사에 성공한 油田에 대해서 과세년도에 투입된 無形試錐비용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업자의 의사에 따라 비용화 또는 資本化될 수 있다. 이 비용중 Dry hole에 대해서는 비용화, 그리고 생산성에 있는 油田에 대해서는 자본화할 수 있다.

□ 資 料 □

당초 財務省이 제안한 1案에서는 이들 無形試錐費用의 손비처리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Ⅱ案에서는 이들 비용의 92%는 손비로 처리되도록 하고, 나머지 8%에 대해서는 특별 항목으로 처리하여 최저세율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탐사에 성공한 油田에 투입된 無形試錐費用의 92%만을 손비로 인정한데 대해서 財務省은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無形試錐비용을 자본화한다 해도 비용이 투입된 이후의 課稅年度에 자본화된 資產의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용이 투입된 課稅年度에 모든 비용을 손비로 회계처리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稅額控除金額의 현재 가치와 이들 비용을 자본화하여 향후의 課稅年度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稅額控除金額의 현재 가치의 차가 8%이다. 따라서 세법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과세의무는 계속되고 있는 국내 에너지資源開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 改正이유

비용과 수익의 대응이라는 전통적인 會計原則下에서 성공한 油田에 투입된 모든 비용은 자본화되어 전 生產年度에 걸쳐 상각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급격한 정책의 변경으로 油價가 침체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国內生產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의 자주공급을 확보한다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현재 國內에너지生産의 인센티브가 되고 있는 無形試錐費用의 비용 처리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도를 남용함으로써 납세자가 納稅義務를 태만히 해서는 안되어 더구나 세제는 석유 및 가스업계와 여타 산업간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IV. 에너지稅額控除제도

1. 控除制度의 현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稅額控除制度는 연료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投資額공제, 알콜

燃料生產 稅額공제로 분류할 수 있다.

연료생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1980~90期間에 生產設備가 設置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연료가 2001年 이전에 판매되어야 한다고 한정되어 있으며, 石油換算기준 배럴당 3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의 주요내용을 分類해 보면

- 셀 및 타르샌드에서 石油生產
- Geopressurized brine, devonian shale, coal seam 및 Biomass 등에서 가스生產
- 石炭에서 合成燃料生產
- 固體農產物에서 스팀生產 등이 있다.

이같은 연료생산에 대한 稅額공제는 国내원유의 產地價格이 배럴당 23.50 달러에서 29.50 달러까지 상승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폐지범위 및 最大控除한도액은 인프레이션율에 따라 조정된다.

에너지投資의 경우에는 太陽熱, 風力, 地熱,大洋熱 프로젝트에 15%, 일부 水力發電 프로젝트에 11%의 稅額控除 혜택이 가능하다.

한편 알콜연료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면 10% 알콜 및 90% 휘발유의 혼합연료 생산의 경우 9 ₩/gal의 物品稅중 6 ₩/gal 면제.

•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의 다른 연료에서 85%의 알콜혼합연료 생산에는 9 ₩/gal의 세금면제. 이때 여타의 연료가 천연가스인 경우에는 4.5 ₩/gal 면제.

• 휘발유, 경유 및 여타의 자동차용 연료와 함께 gasohol 혼합연료에 사용되는 알콜생산에는 60 ₩/gal의 소득세면제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가정용 에너지 절약 및 太陽熱, 風力, 地熱을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가정에 설치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개정내용 및 이유

非在來式 石油 및 가스생산에 대한 稅額控除제도는 중지되어야 하며, 新再生 에너지, 에너지投資, 알콜燃料生產, 가정용 에너지에 대한 각종 稅額공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재무성은 이에 대한 이유로서 다음의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議會가 세액공제를 제도화했을 당시에는 석유 및 가스가격이 통제되어 시장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이나 代替燃料投資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었고, 에너지 대체 코스트가 과소평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원유와 신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통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불필요하다.

둘째, 稅額控除로 인해 原油가격을 초과해서 대체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알콜燃料生產의 경우 60￠/gal의 稅制惠澤을 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30달러 이하의 石油를 1배럴 절약하기 위해 25.2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째, 에너지稅額控除制度는 稅法의 복잡성을 유발시키고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행정적인 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에너지稅額控除제도는 추가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을 권장하기보다는 오히려 中·上流層 가정의 과세의무를 줄이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V. 減價償却法의 改正

財務省은 기존의 減價償却法인 加速償却法(A CRS : Accerlerated Cost Recovery System)을 일부 수정하여 전통적인 原價回收償却法(CCRS : Capital Cost Recovery System)과는 다른 세로운 CCRS法을 제안했다. 재무성이 제안한 세로운 C CRS의 주요내용은 단순한 取得原價보다는 실질자산 코스트를 중심으로 감가상각을 하며, 보다 合理的인 傷却率을 기준으로 자산의 등급을 정하고, 각 등급간에 체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減價償却計劃 및 상각기간을 定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油井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는 3등급에 분류되며 그 상각은 초년도에 33%, 그리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定率로 상각하게 된다.

한편 재무성은 감가상각법의 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기존의 가속상각법(ACRS)으로 인해 기계장치의 분류가 잘못되었으며, 또한 자산의 취득초기에 지나친 상각이 허용되어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非效率的인 投資가 유발되었다.

VI. 外國稅 控除제도

外國稅 控除制度(Foreign tax credit)는 二重課稅를 회피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공제 한도액은 2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하나는 國別限度額(Per-country limitation)으로 납세자의 總課稅所得 중에서 차지하는 해외 각국의 所得比率을 정한 후, 国內 所得稅率을 기준으로 納稅者가 부담해야 할 稅額에 각국의 所得比率을 곱하여 國別限度額을 구한다. 다음은 合計限度額(overall limitation)으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稅額 중에서 총 해외소득비율 만큼의 한도액이 된다.

해외소득에 대해 외국에 소득세로서 세금을 지불한 납세자가 내국세법에 의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外國稅 控除限度額 만큼 내국세가 면제된다. 현재 美세법에서는 상기 2 가지 방식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납세자는 限度額을 擇一할 수 있다.

美 정부는 稅法改正案에서 海外所得控除時에 국별 한도액만을 적용함으로써 어느 한 국가에서 부과된 높은 세율과 여타의 국가에서 부과된 낮은 세율을 서로 平均化하지 못하도록 납세자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석유와 가스산업의 경우 동일한 소득원으로부터 상이한 국가에서 발생한 利益과 損失을 相計하지 못한다. 그러나 해외 석유 및 가스산업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때 여타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과는 相計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여타 산업에서 향후의 과세년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당해년도의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美 정부는 이같은 外國稅 공제제도의 개정의 이유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서로 다른 국가에서 부과된 세율을 납세자가 平均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부과한 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세 공제의 주요한 목표인 이종 과세를 줄이며, 반대로 높은 세율을 부과한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유인을 억제하게 된다.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동향>